

● 제290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1180)**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1181)**

**검 토 보 고 서**

**2019. 11. 2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1180, 1181

### **I. 조례안 개요**

####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 **가.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80)**

-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2) 제 출 일 : 2019. 10. 16.
- (3) 회 부 일 : 2019. 10. 22.

##### **나.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81)**

-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2) 제 출 일 : 2019. 10. 16.
- (3) 회 부 일 : 2019. 10. 22.

#### **2. 제안이유**

##### **가.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80)**

-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동 접근성과 안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는 중소규모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기능을 보완하여 모든 아동들에게 보다 넓고 좋은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돌봄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하여 초등돌봄 질을 견인하고자 운영하는 시설임
- 이에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흥미롭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기획·운영하고, 지역 내 아이돌봄 기관·자원의 수평적 연계망을 구축 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센터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나.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81)**

-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동 접근성과 안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는 중소규모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기능을 보완하여 모든 아동들에게 보다 넓고 좋은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돌봄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하여 초등돌봄 질을 견인하고자 운영하는 시설임
- 특히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여성의 경

제력 향상 및 성평등한 돌봄 환경조성을 위해 건립하는 ‘스페이스살림’ 내 설치하는 것으로, 초등학생 눈높이의 프로젝트 기획 운영 및 돌봄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추진지원단’ 과 긴밀한 업무 연계 협력을 통한 종사자 역량강화, 돌봄자원 연계망 구축 등 업무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80)

##### (1) 시설개요

-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 소재지 : 노원구 동일로 231 다길 10 (상계동1071-2)
- 규 모 : 대지 521.2 $m^2$  / 연면적 1,683 $m^2$ (지하1층~지상5층)
- 준공일 : 2020. 6.(예정)
- 공간구성(안)

구분	면적( $m^2$ )	용도
지상	5층	사무공간, 직원휴게실
	4층	프로젝트기반배움 가변형 교실(3), 교재교구실
	3층	요리교실 등 다용도 활동공간, 전문인력교육장 겸용
	2층	열린 놀이공간, 문·예·체 프로그램 운영실(4개), 작은 휴식공간
	1층	안내, 후정 놀이터, 독서·휴식공간, 보호자 대기공간, 관리실 등
지하	1층	다목적 체육놀이실, 현관, 내외부 창고

## (2) 위탁내용

- 위탁기간 : 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위탁기간 : 2020. 4월 ~ 2023. 3월(3년간)
- 위탁유형 : 시설위탁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조직 및 운영(안) : 4팀, 21명 (센터장 1, 종사자 20)

센터장(1)
운영총괄

기획예산팀(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조정 및 운영 총괄</li> <li>· 조직, 인사, 예산·결산, 지출, 총무</li> <li>·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li> </ul>

돌봄운영팀(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 구성 및 운영</li> <li>· 문·예·체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li> <li>· 긴급돌봄 등 특화돌봄 기획·운영</li> </ul>

돌봄자원연계팀(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li> <li>· 돌봄자원 연계 및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li> <li>· 중소규모 키움센터 교육 지원</li> </ul>

시설팀(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통신·기계 시설물 유지보수</li> <li>· 안전관리 및 건물·주차장 관리</li> <li>· 차량관리 및 운행</li> </ul>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조성·운영 TF를 통해 적정 인력 및 조직구성, 세부 직무분석안 마련 예정

### ○ 위탁사무 내용

- 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관리 및 시설·물품 관리
- 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 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서비스 기획 및 운영
- 권역 내 아이돌봄 자원 연계 및 인적·물적 연계기반 마련

- 권역 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
- 권역 내 아이돌봄 관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권역 내 중소 아이돌봄 시설 서비스 개선 및 이용 지원
- 제1호 거점형키움센터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
-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서울시 초등돌봄 사업추진 관련 업무 협조

### (3)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 (시장방침 제33호, 2019.3.6.)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계획」 (아이돌봄담당관-5588, 2019.4.29.)
- 「2020년 거점형키움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아이돌봄담당관 - 10676(2019.8.23.))
- 「2019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후속절차 안내」 (조직담당관-11925, 2019.9.19.)

### (4) 민간위탁 필요성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1,000㎡ 이상 규모의 복지시설로 20~25명 수준의 인력관리 및 초등학생 대상 문화·놀이·예술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돌봄 서비스 제공 등 거점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와 수평적 연계를 통해 아이돌봄 협력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연계·매칭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자원 활용이 필요함

#### 나.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81)

##### (1) 시설개요

-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 소재지 : 동작구 대방동 340-4번지 외 3필지
- 규 모 : 스페이스살림 내 594.2 $m^2$ (1층 485.3 $m^2$ , 2층 110.9 $m^2$ )
- 준공일 : 2020. 6.(예정)
- 공간구성(안)

구분		면적( $m^2$ )	용도
지상	2층	110.9	사무공간, 놀이치료·특화 가족지원 등 집중 치유공간
	1층	485.3	프로젝트기반배움 가변형 교실, 다목적 놀이공간, 전문인력교육장 겸용

※ 1층 외부에 키움센터와 이어지는 옥외놀이터(78.33 $m^2$ ) 공간 별도로 조성예정

##### (2) 위탁내용

- 위탁기간 :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위탁기간 : 2020. 6월 ~ 2023. 5월(3년간)
- 위탁유형 : 시설위탁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조직 및 운영(안) : 3팀, 16명 (센터장 1, 종사자 15)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센터장(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운영총괄</td> </tr> </table>			센터장(1)	운영총괄				
센터장(1)								
운영총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획총무팀(6)</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조정 및 운영 총괄</li> <li>· 조직인사, 예산·결산·지출 총무</li> <li>·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li> <li>· 시설안전관리 및 차량관리·운영</li> </ul> </td> </tr> </table>	기획총무팀(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조정 및 운영 총괄</li> <li>· 조직인사, 예산·결산·지출 총무</li> <li>·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li> <li>· 시설안전관리 및 차량관리·운영</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돌봄운영팀(6)</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 구성 및 운영</li> <li>· 문예체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li> <li>· 돌봄서비스 제공 기획 및 운영</li> </ul> </td> </tr> </table>	돌봄운영팀(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 구성 및 운영</li> <li>· 문예체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li> <li>· 돌봄서비스 제공 기획 및 운영</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돌봄자원연계팀(3)</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li> <li>· 돌봄자원 연계 및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li> <li>· 중소규모 키움센터 교육 지원</li> </ul> </td> </tr> </table>	돌봄자원연계팀(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li> <li>· 돌봄자원 연계 및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li> <li>· 중소규모 키움센터 교육 지원</li> </ul>
기획총무팀(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조정 및 운영 총괄</li> <li>· 조직인사, 예산·결산·지출 총무</li> <li>·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li> <li>· 시설안전관리 및 차량관리·운영</li> </ul>								
돌봄운영팀(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 구성 및 운영</li> <li>· 문예체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li> <li>· 돌봄서비스 제공 기획 및 운영</li> </ul>								
돌봄자원연계팀(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li> <li>· 돌봄자원 연계 및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li> <li>· 중소규모 키움센터 교육 지원</li> </ul>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조성·운영 TF를 통해 적정 인력 및 조직구성, 세부 직무분석안 마련 예정

○ 위탁사무 내용

-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관리 및 시설·물품 관리
-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서비스 기획 및 운영
- 권역 내 아이돌봄 자원 연계 및 인적·물적 연계기반 마련
- 권역 내 아이돌봄 관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온마을아이돌봄추진지원단과 업무 연계·협력 및 지원
- 권역 내 중소 아이돌봄 시설 서비스 개선 및 이용 지원
- 권역 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
- 제2호 거점형키움센터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
-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서울시 초등돌봄 사업추진 관련 업무 협조



- '20년 소요예산(안) : 1,323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3)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 (시장방침 제 33호, 2019.3.6.)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계획」 (아이돌봄 담당관-5588, 2019.4.29.)
- 「2020년 거점형키움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아이돌봄담당관 - 10676(2019.8.23.)
- 「2019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후속절차 안내」 (조직담당관-11925, 2019.9.19.)

### (4) 민간위탁 필요성

-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권역 내 초등학생 대상 문화·놀이·예술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돌봄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와 수평적 연계를 통한 아이돌봄 협력망 구축 및 인적·물적 아이돌봄자원 연계 등 기능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시설임
- 특히 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여성의 경제력 향상 및 성평등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대표공간인 스페이스살림 내 설치하는 것으로,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내 운영중인 '온마을 아이돌봄 추진지원단'과 긴밀한 업무 연계·협력, 권역 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및 교육지원 등 기능을 유연하게 수행하기 위해 민간자원을 활용한 업무수행이 필요함

#### 4. 참고사항

##### 가.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80)

###### (1)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09.7.30, 2014.5.14>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예산조치 : 2020년 예산 편성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기 타 :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의 예외적 동시상정

○ '19.6월 제287회 정례회 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성 예산이 반영되었고, 이후 지역별 돌봄수요 및 인프라 등을 고려한 입지 발굴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어 8월경 대상지 확정과 운영기능이 구체화 되었음

○ 예산반영 즉시, 적정 지역 분석과 물건확보를 조속히 진행하긴 했으나 시기적인 한계가 있어

○ '19.8월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9.6.) 등의 절차 진행이 불가피했고, 이에 부득이 거점형키움센터 1호점에 대한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을 예외적으로 동시상정하게 되었음

나.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81)

(1)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09.7.30, 2014.5.14>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예산조치 : 2020년 예산 편성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기 타 :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의 예외적 동시상정

○ 서울시 스페이스살림 조성 과정에서 ‘여성 창업 기능’ 과 함께 ‘성평등한 돌봄환경 조성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19. 5월 거점형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스페이스 살림 설계에 반영하기로 하였고, 이후 거점형 센터로서의 면적 확정과 거점형으로서 기능구성, 기본적인 운영 서비스 사항의 정립이 ’19.8월경 구체화되었음

○ 이에 ’19.8월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및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안건 제출, 심의(’19.9.6.) 등 절차 진행이 가능하였고, 조직담당관 적정통보(’19.9.19.)에 따라 부득이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을 예외적으로 동시상정 하게 되었음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동의안의 개요

- 동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동의안 2건은 각각 ‘(가칭)제1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가칭)제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sup>1)</sup>에 따라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임.
  
- 시장이 민간위탁 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센터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센터 종사자 관리 및 시설·물품 관리
  - 센터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 센터 돌봄서비스 기획 및 운영
  - 센터 권역 내 아이돌봄 자원 연계 및 인적·물적 연계기반 마련
  - 센터 권역 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
  - 권역 내 아이돌봄 관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센터 권역 내 아이돌봄 관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센터 권역 내 중소 아이돌봄 시설 서비스 개선 및 이용 지원
- 센터별 콘텐츠 홍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
-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서울시 초등돌봄 사업추진 관련 업무 협조

○ 거점형 키움센터(이하 “거점센터”라 함)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sup>2)</sup> 및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5호<sup>3)</sup>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아동 대상 돌봄 시설의 하나로 일반형 및 융합형 키움센터와 연계한 특화 예술 프로그램 제공, 주말·저녁시간 등에 틈새·긴급돌봄 공급 및 지역 내 돌봄 거점으로서, 중·소규모 돌봄기관의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 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 3)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돌봄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 시의 공공시설 등 공간을 활용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 대상 방과후 돌봄, 교육·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의 제공 등 초등돌봄 사업

### <키움센터 유형별 기능 및 역할>

(국시비 매칭, 3:7)		(전액 시비투자, 서울形 모델)	
<b>기능 및 역할</b>	<b>일반형 키움센터</b>	<b>융합형 키움센터</b>	<b>거점형 키움센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li> <li>• 틈새돌봄 수요와 접근성 중시</li> <li>• 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과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아동센터와 협업·상생모델</li> <li>• 마을권역별 돌봄거점 역할 수행</li> <li>• 긴급주말돌봄 강화, 급식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대표 특화 돌봄 서비스 제공</li> <li>• 문화·예술·체육, 부모교육 강화</li> <li>• 일반형·융합형 단점 보완지원</li> </ul>
<b>면 적</b>	66㎡ 이상 (小규모, 구립)	210㎡ 이상 (中규모, 구립)	1,000㎡ 이상 (大규모, 시립)

- 동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은 순수 시비 지원으로 거점센터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시 설 명	(가칭)제1호 거점형 키움센터	(가칭)제2호 거점형 키움센터
소 재 지	노원구 동일로 231 다길 10(상계동1071-2)	동작구 대방동 340-4번지 외 3필지
규 모	연면적 1,683㎡(대지 521.2㎡, 지하1~지상5층)	스페이스살림 내 594.2㎡(1층 485.3, 2층 110.9)
준공예정일	2020. 6.	2020. 9.
위 탁 사 무	제1호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전반	제2호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전반
위 탁 기 간	2020. 4월 ~ 2023. 3월(3년간)	2020. 6월 ~ 2023. 5월(3년간)
조직운영(안)	4팀, 21명 (센터장 1, 종사자 20)	3팀, 16명 (센터장 1, 종사자 15)
'20년 예산(안)*	1,353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1,323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수탁체 선정	공개모집	



### 3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sup>4)</sup>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제44조의2<sup>5)</sup> 및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sup>6)</sup>에 시장이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하고 있는 바, 방과후 초등돌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4)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동 거점센터의 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며,

-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문화·예술·체육 전문 프로그램 제공 및 부모 상담, 일반형·융합형 센터를 포함한 돌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특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에 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점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또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8)에서 돌봄시설을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8)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4 종합 검토 의견

- 금번 시장이 제출한 두 건의 위탁 사무는 초등 방과후 돌봄 시설 중 문화·예술·체육 전문 프로그램 제공 및 부모 상담, 일반형·융합형 센터를 포함한 돌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특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 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이에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할 것임.